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거나 수정 후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되, 수정하는 게임물의 내용이 기존의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신고의무를 면제함(안 제21조제5항).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심사 요건 중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 규정을 삭제하고, 사업자 지정 대상 업종에 “부가통신사업자”를 추가함(안 제21조의2).
- 게임제작업·배급업·제공업 등의 폐업 신고 기간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제작업 등의 폐업 미신고시 허가 또는 등록·신고사항의 직권 말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제3항).

II. 검토의견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관련(안 제21조의2제2항제1호)

안 제21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서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으로,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 외에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이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 제26조제2항 단서¹⁾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가통신사업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등록이 간주되어 게임제공업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개별 조문간 내용이 통일적으로 규율될 수 있도록 법문을 정비한 수정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가. 게임제작업, <u>게임배급업</u> <u>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u> <u>하는 자로서</u> 최근 3년간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② ----- ----- ----- ---. 1. ----- ----- 가. ----- <u>게임배급</u> <u>업, 게임제공업 또는 제</u> <u>26조제2항 단서에 따른</u>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② ----- ----- ----- ---. 1. ----- ----- 가. ----- <u>게임배급</u> <u>업, 게임제공업을 영위하</u> <u>는 자(제26조제2항 단서</u>

평균 매출액이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 액 이상일 것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 는 자----- ----- ----- ----- -----매출액 또는 자본금----- ----- -----	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 는 자로서 「전기통신사 업법」에 따라 신고 또 는 등록된 자를 포함한 다)----- -----매출액 또는 자본금----- ----- -----
---	---	---

2. 폐업신고 등에 있어 정보제공 요청 관련(안 제30조제3항)

안 제30조제3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게임제작업 등의 폐업 미신고시 직권말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2)에서는 세무공무원이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②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법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호에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정보제공 요청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은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세청은 유사 입법례³⁾ 등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등이 게임제작업, 제임제공업 등에 대한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주서본에 반영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
<신 설>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관광진흥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⑩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직권말소 또는 직권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광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구청장은 제2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

3. 부칙

안 제21조의6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는바, 재지정기간 연장이 새로이 지정을 받은 자부터 그 대상이 되는지, 기존에 지정을 받은 자도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므로 부칙의 적용례를 통해 어떤 대상이나 어떤 경우부터 적용할 것인지에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음.

한편, 안 제24조의3에서는 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에 있어 등급분류기관 임직원의 교육시간 강화, 의사결정 회의록 작성 의무화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는바, 기존에 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업무를 위탁받은 등급분류기관도 준수사항을 이행할 의무 대상이 되는지, 새로이 위탁받은 기관부터 적용할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부칙의 적용례를 통해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는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한 수정의견은 다음과 같음.

개 정 안(부칙)	수정의견
<신 설>	제3조(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1조의2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자를 재지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설>	<u>제4조(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등급분류기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u>
-------	--

(전문위원 이 화 실)